충청북도중·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

제출년월일 : 1998. 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사유

교육기본법, 초·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중·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 조례에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부여되도록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○ "교육법 제158조"를 "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"으로 함(안 제1조)

○ 특별장학생에 대한 공납금의 면제범위 "입학금, 수업료, 육성회비"를 "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"로 함(안 제5조)

○ 특별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중 "징학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"를 "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"로 함(안 제7조제1항제2호)

□ 개정근거 :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

□ 조 례 안 : 붙임

□ 참고사항

○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○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충청북도중·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중·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교육법 제158조"를 "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중 "육성회비"를 "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"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